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적 함의

- 미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Case Study of Programs in the USA and Sweden

박명숙(Myungsook Park)¹⁾

ABSTRACT

Even though so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has begu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servic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child welfare services, this comparative study reviewed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USA and Sweden. Results indicated directions for effective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re comprehensive and should be provided by community resources. Comprehensive services and follow-up of reported cases should b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community networks. Education curricula for professionals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hould be organized. A most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is to set up firm laws and policies for effective service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아동보호서비스(CPS : Child Protective Services), 가족보존(family preservation),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basic and comprehensive services),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ongoing risk assessment and support), 서비스의 전문성 및 연계성 (specialized and collaborative services).

I. 서 론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천현장과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사례가 신고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한국사회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보건복지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3-B00155).

¹⁾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yungsook Park, Sa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660 Woosan-dong, Wonju-city, Kangwon-do
E-mail : mspark@mail.sangji.ac.kr

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6), 2005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수는 총 8000여건이었고, 그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633건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박학대 1,710건(36.9%), 방임 1,635건(35.3%), 정서적학대 12건(11.1%), 신체적학대 423건(9.1%), 성학대 206건(4.4%), 유기 147건(3.2%)이었으며, 중박학대를 제외한 개별학대 유형으로는 방임 2,416건(36.4%), 정서적학대 2,034건(30.5%), 신체적학대 1,728건(25.9%)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학대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하겠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서구의 모델들은 한국사회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 : Child Protective Services)의 시행 초기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향후 아동보호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구사회의 아동보호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시작된 지 6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학대아동이 신고되거나 발견된 이후에 제공되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의 발달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 가장 바

람직한 성장환경을 가정이라고 했을 때,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에서 원가정의 보존 및 유지를 지향하는 서비스 제공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가족 보존의 원칙은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을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내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그 가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이러한 원조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부모와 가정이 아동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지닌 가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박명숙, 2003). 이에 본 연구는 가족보존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는 서구사회의 서비스들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인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과 스웨덴의 서비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시작에 중요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문화에서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세계적으로 사회복지국가의 모델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학대아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모든 재정적 지원 및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험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피학대아동에 대한 개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해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물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는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규, 정책, 정부 및 민간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들의 사업실태 보고서, 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자들과의 면담, Focus group을 통한 아동보호서비스 관련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천현장에서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나 예방과 관련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미국과 스웨덴의 피학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검토

본 연구에서는 LeVine과 Sallee(1999)가 제시하고 있는 가족보존원칙의 기본요소를 중심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아동보호서비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LeVine과 Sallee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지속적인 위험사정, 욕구충족에 있어서 유연성,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시 동반자관계형성, 옹호 등 가족보존서비스의 6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Vine과 Sallee가 제시하고 있는 가족보존원칙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1)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2)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 3)전문적 서비스, 4)서비스의 연계성으로 재정리하여 연구를 위한 검토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 미국

1) 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미국의 아동학대 서비스는 복합적인 현상으로써 아동학대 문제를 설명하는 최근의 아동보호 서비스 경향에 따라 피학대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아동보호제도는 “사회적, 법적” 시각에 입각하여 질차를 존중하되 이런 절차가 법과 질서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보다 노력하고 있는 것(윤혜미, 200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면서 관련기관을 통한 예방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긴급서비스, 상담서비스, 단기특별 상담서비스, 가정보조서비스, 부모보조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의료/신체적 보호, 정신건강상담, 낮보호, 보육서비스, 부모교육, 교통편 제공서비스, 자조집단, 직업훈련, 의형제 프로그램(Big Brother/Sister), 위탁가정, 공공부조 등이 있다. 또한, 부모 뿐 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건강, 정신보건, 치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4)¹⁾.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보

1)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4. <http://www.cwla.org>.

호서비스 실무자(CPS worker)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공, 사적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또는 관련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치료서비스 등은 실무자의 역할을 벗어나고, 실무자의 역할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다(윤혜미, 2004). 이러한 역할의 명확한 규정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운영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가정내 서비스(In-home services)와 2)가정외 서비스(Out-of-home services)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CPS 또는 법원에 의해 판단되는 아동의 가정내 “안전성” 여부이다. 가정내 서비스(In-home services)는 각 주에 따라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s),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s), 심층적 가족기반서비스(intensive home-based services), 가족위기서비스(family crisis services), 가족중심서비스(family-centered services), 가족재결합서비스(family reunification services)등으로 그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정외 거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의 제공 및 보호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미 아동이 가정 외에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재결합하여 원 가정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이 집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이를 “안전성 계획(safety plan)”이라고 하며, CPS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가정외 서비스(Out-of-home services)의 경우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로 그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탁보호(Foster car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정외 서비스에는 친족보호(Kinship care), 응급쉼터(Emergency shelter), 위탁가정(Foster family home), 치료위탁가정(Therapeutic foster home),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치료시설거주(Residential treatment center),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생활배정(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 for older youth)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이 가정 외에서 거주할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동시서비스계획(concurrent service pla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비스는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아동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자들은 친부모의 양육권이 말소되기 전에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을 확보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키며, 필요에 따라서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아동을 미리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아동의 가정외 거주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입양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성”이 서비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가족보존원칙의 실현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 및 지역사회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아동보호국의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동학대조사과, 아동보호서비스과, 위탁가정과로 구분되어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1)는 사실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알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로 인

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사례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인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중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지속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위탁보호(Foster care)가 끝난 후에 제공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재결합(reunification), 2)입양(adoption), 3)후견인 보호(guardianship/kinship care), 4)독립 생활(independent living)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안전(safety), 안녕(well-being)과 함께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의 3대 주요 목표인 영구성(permanency)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재결합은 아동이 위탁보호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서, 연방법에 의하면 가장 선호되는 사후위탁보호서비스(after foster care service)이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아동의 부모로서의 권리 및 책임을 영구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법원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후견인 보호는 법원에 의해 새롭게 설정된 아동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재결합이나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선택되는 사후관리 방법이다. 만약 아동의 친척이 이러한 후견인 권한(guardianship)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친족보호(kinship care)”라고 한다. 독립 생활은 아동이 성장하여 일정 연령이 되어 더 이상 위탁보호에 있을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는 아동이 위탁보호를 벗어난 후에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서비스(재결합, 입양, 후견인 보호)를 택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

된다. 아동은 위탁보호에 있는 동안에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예 : 금전 관리, 거주지 확보, 교통, 직업개발, 구직, 고용유지, 일상생활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독립생활 서비스(independent living service)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내용이다. 즉, 미국의 경우 개입이 종결된 이후에도 매우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Kemp, 1998)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3) 전문적 서비스

Tower(2004)는 향후 미국의 CPS가 나아가야 할 3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전문성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미국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개입하기 위해서 CPS 기관을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 내에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내의 Office of Training Services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자들은 4개월간 총 80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기존직원 역시 매년 4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개입과 관련된 교육 뿐 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훈련, 사례에 대

한 전산처리를 위한 각종 컴퓨터관련 훈련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아동학대업무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도감독(supervision)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의 경우 아동학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내의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Program Operation은 5명의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자 당 1명의 슈퍼바이저가 배정되고, 4-5명의 슈퍼바이저 당 1명의 프로그램 매니저가 배정되며, 4명의 프로그램 매니저 당 1명의 행정담당자가 배정되는 supervision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이 외에도 아동상담을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들은 상담현장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화를 위해 워크샵이나 학회 등 전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Tower(2004)는 초기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 강조, 특히, 교육기관에서(대학 등)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분석, 문화적 능력, 정치적 체계 등에 대한 정교한 연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도 아동보호서비스가 진행되면서, 현재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supervision체계의 구축은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서비스의 연계성

서비스의 축소, 가족보존의 강조, 지역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강화의 분위기 속에서 향후 미국의 CPS 방향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서비스는 관련기관사이의 연계성 강화, 지역의 종교기관, 시민단체, 확대가족 등 비공식적이고 자연적인 원조자개발 및 강화를 통한 자원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Tower, 2004). 이러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연계적인 서비스 수행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아동학대 Ombudsman의 연중 보고서 등 아동학대 관련서비스를 평가하는 각종 보고서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다분야간의 협력정도를 서비스 성패의 주요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박명숙, 2002).

특히, 미국의 경우 주 정부의 CPS기관과 함께, 경찰, 법원은 학대 및 방임된 아동과 그 가정의 문제에 대처할 책임을 지니며, 그 외 여러 공적부조 프로그램, 정신보건, 청소년 사법, 공공보건, 약물남용 등과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들도 역시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4)²⁾는 사실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타전문직과의 활발한 연계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의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내의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Clinical Practice는 심리치료사, 소아과 의사, 약

2)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4. <http://www.cwla.org>.

물전문가, 교육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부서로써, 이들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행여부를 모니터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경찰 및 법원과의 협력체계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학대 전담경찰 배치 및 실무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예를 들면, 법원과 연계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CPS는 필요한 경우 “응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을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접수시키고, 아동에 대한 임시 보호권을 갖게 된다. 이는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적권한을 얻는 것으로, 그 권한은 임시적이며 연장여부는 “응급상황제거청취(emergency removal hearing)”라는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년 제정, 1996년 개정)에 의한 것이다.

연계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법(State Laws)에서는 신고의무자(또는 일반인)에 대한 규정, 신고해야 하는 사항, 우선적인 정보사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고절차 등 아동학대에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법은 연방정부의 법률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Portwood, Reppucci, & Mitchell, 1998). 특히, 실무자의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부여와 이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신고의무자들을 추가하는 등 지

속적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은폐된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례들을 적극 노출하여 치료와 예방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함께(윤혜미, 2004),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 유발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피학대아동 및 가정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Texas주의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CPS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할 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Community Partners”라는 프로그램이다³⁾. “Community Partners”는 기부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들 아동 및 가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기본목표는 아동학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학대 및 방임된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주교자 하는 데 있다. 아동학대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간의 연계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연계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나 법규 마련은 효과적인 연계의 필수사항임을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국가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독립법안인 CAPTA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지원 및 감독 하에 모든

3) “Community Partne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명숙(2002)을 참조.

주는 연방정부의 기본적 방향에 일치하는 범주에서 자체적인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규 및 행정조직을 가지고 학대 및 방임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개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보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전적인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사회에 확산된 기부문화화를 바탕으로 설립된 각종 민간기관 및 아동학대 관련재단의 기금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 및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보존의 원칙과 관련하여, 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러한 서비스는 공적기관인 CPS에 의해 운영 및 감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관련분야와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중요한 원칙인 “영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기관 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의 기회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타전문직과의 연계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스웨덴⁴⁾

1) 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스웨덴에서 모든 개인들은 공공복지를 제공받

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 역시 공공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지난 50년간 강력한 정부기관에 의해 발달되어왔다. 현재 스웨덴의 아동보호서비스는 각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스웨덴 복지체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Social Services Act”(2003년 개정)는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이를 감독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Social Services Act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의 욕구 및 부모의 강점과 약점 등 가정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이루어진다. 심각한 학대사례의 경우 가족보존은 불가능하므로 아동은 처음에 보호를 받는다. 아동이 자신의 가정 외의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는 자발적인 선택이거나 보호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상황에 따라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가 제공된다. 경미한 학대의 경우는 사회사업가나 family worker에 의한 지도가 제공되는데, 1년에 5회기 또는 그 이상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가끔은 클라이언트의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등이며, 부모들은 부모 교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아동은 한 달에 1-2주씩 사회서비스에 의해 선정 및 훈련된 다른 가정에 머물기도 한다. 또한, 숙제나 사회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아동은 일주일에 1-2번씩 다른 가정이나 성인들과의 만남을 갖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뢰되기도 하는데, 만약 지방정부가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서비스는 이 가정이 민간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

4) 스웨덴에 관한 문헌자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본 논문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스웨덴에서 20년 이상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 3명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들로 구성되었음.

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모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아동은 위탁가정에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약물을 하는 부모와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약물을 했다면 아동은 분리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잘못된 양육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엄마와 살고 있는 아동이나, 폭력적인 남편과 헤어지고자 하는 엄마와 사는 아동의 경우도 위탁가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차원으로써 모든 아동 및 가정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모든 아동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 역시 모든 아동에게 실시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제공시 위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가정 센터를 통한 서비스, 어린아동이 있는 부모를 위한 낮 치료프로그램,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가족 및 개인에 대한 지지프로그램, 가족치료, 가족이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개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며, 때로는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NGO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작은 지방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를 인근의 다른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사회서비스에 의해 제공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직접 데리러 가거나, 또는 이들이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다.

정부의 공적기관들과 함께 NGO 단체나 민간기관들에서도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업무는 매우 일반적인

사항들이거나 공적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면, 이들 NGO 단체나 민간기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몇몇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The Swedish Save the Children”이라는 스톡홀름에 있는 치료기관의 경우 성 학대를 당한 아동 등 특수한 클라이언트 집단이 의뢰될 경우 이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치료기관들은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치료나 외래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 비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제공되며, 따라서 이러한 치료는 사회서비스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즉, 스웨덴의 경우 피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모든 지원을 공적비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영역도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다.

2)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

스웨덴의 아동학대신고와 관련된 연구에서 Sundell(1997)은 학대이후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단지 기관이 아동학대사례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스웨덴에서 사회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민간기관에서의 치료가 결정된 경우에도 공공 아동보호기관 및 직원은 지속적으로 그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례회의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

적 관리를 통해 그 가정의 상황이 더 향상되었는지,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중단되어야 하는지가 평가된다. 그러나, 사례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제거되면 서비스는 종결된다. 예를 들어, 그 가정에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종결되고, 종결 후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후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사례가 종결되면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아동보호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사회사업가가 너무 빨리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그들은 다시 그 가정에 대한 신고를 통해 사례를 시작하여 조사를 할 수가 있다. 때로는 아동이 보호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발적인 사례에서 미자발적 사례로 전환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전문적 서비스

스웨덴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학에서 사회사업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없으며, 일반사회사업가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고 훈련과정도 일반 caseworker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사업가협회 역시 사회사업학위가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면서 심리, 법, 사회제도, 행정 등 다양한 관련과목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아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은 대개 고용된 기관에 의해 단기간 제공된다. 재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계획 및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 실시 등에 관한 의무규정은 없다. 현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사례에서 아동과의 면접방법”, “성 학대 사례를 다루는 방법”, “보호명령 사례의 진행방법”, “아동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방법” 등의 주제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대학에서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도 하여 실무자들 중에는 대학에서 추가적인 수업을 듣기도 하고, 치료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훈련과정을 받기도 한다. 스웨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체계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속에서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매우 강조됨을 알 수 있다.

4) 서비스의 연계성

스웨덴 사회서비스에서 아동학대서비스 실무자들은 항상 다른 전문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는데, 이것은 법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면 대개 조정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며, 최근에 개정된 Social Services Act(2003년 개정)에서는 사회서비스는 필요할 경우 연계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 대한 사회사업가 및 family worker의 조사, 사정, 치료에 있어서 연계는 당연하다. 스웨덴에서는 예를 들면, 한 지역당국에서 사회서비스에 의해 고용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감독자를 가지게 되며, 이들은 빈번한 접촉을 한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및 부모에 대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일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은 많은 가능성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지도감독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업무의 통합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전문가들 사이의 연계성은 20년 넘게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성 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이러한 연계작업은 가장 잘 이루어진다. 성학대의 경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아동보호서비스팀, 경찰 조사팀, 검사, 소아과 의사, 아동 정신과팀, 성인 정신과팀 등의 대표가 함께 모여, 정부는 이것을 권고하고 있고 스웨덴 전역에서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성 학대나 신체적 학대에 있어서 범죄관련 상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연계작업이 이루어진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해 사회사업가는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이 그 아동의 의료기록을 요청할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의사가 이를 거절한다면 그는 위법행위로 신고된다. 또한, 실무자들은 아동의 유치원 및 학교 교사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 즉, 스웨덴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연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직간에 효과적인 연계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정책적, 법률적 뒷받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천현장에서 연계성에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몇 연구들은 표준화된 사정절차의 부족, 상호적인 개념들의 부재, 전문가들의 능력 및 인식의 부족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전문직의 연계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Sundell, 1997; Gumpert & Lindblad, 2001).

즉, 스웨덴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 및 국민의 권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체계 확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전적인 재정지원 및 책임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로서의 가족”을 강조하는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가족보존을 위한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아동 및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공 및 지원은 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경우 일반사회사업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자들 사이에 또는 실무자와 지도감독자들 사이에 활발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명확한 범규정을 통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실천적 함의 : 한국사회에서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 방안

앞에서 살펴본 미국과 스웨덴의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사회에서 피학대 아동 및 그 가정을 위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가족보존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피학대 아동과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스웨

덴의 경우 아동의 학교숙제까지도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의 경우 신고사례에 대한 물리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경험이 초래하는 치명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근에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및 조직과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은 아동학대사업의 예산문제에 대한 부담감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관, 학교, 의료기관, 경찰, 학원, 종교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대아동 및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예 : 세금감면, 기관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제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피학대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은 노인에게 일정정도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 및 기업체와 연계하여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자존감이 매우 낮고, 성취동기가 낮은 특성을 고려할 때(고미영, 2004; 최은희 외, 2005; 한지숙, 2004), 멘토와의 관계를 통한 동기유발 및 역할모델의 제공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학대아동의 부모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부모교육 강제수강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이 속해있는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심리적, 의료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2.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

피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종결이후에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우리의 경우 각 시, 도에 설치된 1-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사례에 대한 신고부터 사후관리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신고 및 발견된 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개입이 종결된 이후에는 해당 사례를 지역사회의 관련 복지기관이나 관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의뢰하여, 이들 기관 및 인력을 통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제한된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해당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사례를 검토, 평가, 보고하는 업무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웨덴

의 경우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의 신고를 통해 사례에 대한 개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 서비스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자격 및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격제도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실무자들도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졸업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과목의 수강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쉼터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에서의 실습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의 맥락 속에서 현재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본인의 적성 및 자격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하여 공무원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배치의 고려사항으로 위에서 언급한 아동학대 관련교과목 수강 및 실습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발절차는 아동학대 실무자들의 전문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러한 자격 및 시험을 통해 선발된 경우에도 근무 전에 관련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무적인 교육내용 및 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이미 근

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1년에 1-2회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재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카하시(2002)의 비교검토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의 경우 석, 박사 등 아동학대분야에 전문적 인력이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좋은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 배정 시 전공 및 학위를 고려하여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일반적인 업무를 구분하여 배치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론위주의 100시간 교육은 교육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면 이 기관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이론적 측면과 함께 실무적 측면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에서 강조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주제별로 이수시간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강의와 함께 실천현장의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토의, 관련기관의 견학 및 실습 등을 일정한 비율로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의 연계성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분야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우

리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타 전문분야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에 의해 이러한 연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계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해 사회사업가가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연계적인 서비스의 수행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거나 서비스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이러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해야 하는 기관의 유형, 기관 수, 책임담당자, 정기적인 사례회의 횟수, 회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시 이러한 연계성 여부 및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해당기관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예: 평가시 가산점 부여, 정부지원금 우선배정 등)의 제공을 통해 연계에 대한 동기유발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관련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Sundell(1997)이 제시한 것처럼, 다분야간의 교육프로그램(multi-agency training) 제공, 신고에 대한 신고자들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개입 및 해당기관에 조사에 대한 feedback 제공 등 조사절차 강화 및 보완, 아동에게 실제로 혜택(서비스)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신고자와의 상호작용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자원 및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강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친족이나 지역적 연대의식이 매우 강한 한국적 문화를 고려할 때 비공식적이고 자연적인 연계망의 활성화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우리와 매우 유사한 경험 및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되고 있는데, 2002년 6월에 702개의 시정촌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323개 시정촌이 설치계획 중에 있다(일본사회보장심의회아동부회, 2003).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은 동양적 문화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 지역사회모임,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안전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사회에서 피해대아동을 위한 서비스 방안들 중 몇 가지 사항은 현재 실행이 논의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법규의 마련과 정책적 뒷받침이 제공될 때 만이 가능할 것이다. Sundell(1997)이 지적한 것처럼, 아동학대 발생 이후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단지 기관이 아동학대사건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아동 및

아동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관심과 노력이 피학대아동의 발견 및 신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의 중요한 관심영역은 학대사례 발견이후의 효과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보존이라는 중요한 실천적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지속적인 사정 및 지원, 전문적 서비스, 서비스의 연계성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미영(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경기개발연구원(2001).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다카하시 시게이로(2002). 6개국 아동보호체계 비교 검토.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제적 동향 세미나 자료집.
- 박명숙(2002). 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기관들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3, 27-52.
- 박명숙(2003).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고찰한 현행 아동학대서비스에 대한 검토. **아동권리 연구**, 7(3), 503-526.
-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4). **선진 각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 미국, 영국, 호주**.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일본사회보장심의회아동부회(2003). 일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전문위원회 보고서.
- 윤혜미(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4). 아동학대예방사업 해외 연수보고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최은희·윤여정·류경희(2005). 학대받은 아동의 쉼터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9, 37-73.
- 한지숙(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요인.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Gumpert, C., & Lindblad, F. (2001).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and expert witness in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child sexual abuse in Sweden : a case review. *Child Abuse & Neglect*, 25, 1497-1516.
- LeVine, E., & Sallee, A. (1999). *Child welfare : clinical theory and practice*. IA : eddie bowers publishing, inc.
- Kemp, A. (1998). *Abuse in the family : An introduction*. CA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Portwood, S., Reppucci, N., & Mitchell, M. (1998). Balanc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Legal perspectives on child maltreatment. In J. R. Lutzker (Ed.), *Handbook of child abuse research and treatment*(pp.31-52), New York :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 Sundell, K. (1997). Child-care personnel's failure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 some swedish evidence. *Child Abuse & Neglect*, 21, 93-105.
- Tower, C. (2004). *Exploring child welfare : a practice perspective*(3rd Ed.). New York : Pearson.

2006년 6월 30일 투고 : 2006년 9월 9일 채택